

-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 
새보금자리 찾기 -

2024년  
바生活环境!  
행복

# 바꿔줘! 흡족 사업이란?



지역사회 내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성하고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궁공임대주택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

# 추진가요!

- 추진기간: 2024. 3. 1. ~ 12. 31.
- 추진대상: 관내 고시원, 여인숙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 
☞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 제1항  
규정한 대상자 중 소득 기준,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
- 추진내용: 주거복지안전망 구성하여 주거취약계층  
선제적 발굴 및 지원
  - ▷ 단계별 추진내용
    - 1단계: 주거복지안전망 구성
    - 2단계: 주거취약계층 발굴
    - 3단계: 임대주택 지원(LH 매입, 전세임대 주택 지원)
    - 4단계: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

#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주택 지원 기준

## ▶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(입주대상자)

제3조 제1항	대상자
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아래 항목에 대해 3개월 이상 거주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쪽방</li><li>나. 고시원, 여인숙</li><li>다. 비닐하우스</li><li>라. 노숙인시설 (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)</li><li>마. 컨테이너, 웜막 등</li><li>바. PC방, 만화방</li></ul></li><li>사. 최저주거기준(「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」 별표 6] 제5호 또는 「최저 주거기준」 공고 제2조 '용도별 방의 개수'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흥수,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.</li></ul>
2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가정폭력 피해자,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,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, 운영 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</li></ul>
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</li></ul>
4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에 따라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</li></ul>

#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주택 지원 기준

## ▷ 주택여부

유주택자	무주택자
X	O

## ▷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

[기준년도: 2023년]

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
2,347,719원	3,003,226원	3,359,099원

## ▷ 자산기준

[기준년도: 2023년]

총자산	자동차(차량가액)
2억 5,500만원	3,683만원

#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주택 지원 유형

구분	매입임대주택	전세임대주택
내용	공공주택사업자(LH)에서 매입한 후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	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(LH)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
임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거주자 등 (주 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제3조 1, 3, 4항 대상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‣ 보증금: 본인부담금 50만원</li> <li>‣ 월 임대료: 매입임대주택 조건과 동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거주자 등 (주 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제3조 1, 3, 4항 대상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‣ 보증금: 본인부담금 50만원</li> <li>‣ 월 임대료: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동일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죄피해자 (주 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제3조 2항 대상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‣ 보증금 및 월 임대료: 매입임대주택 조건과 동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죄피해자 (주 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 제3조 2항 대상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‣ 보증금 및 월 임대료: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동일</li> </ul> </li> </ul>
전세금지원한 도액	-	광역시 9,000만원 ※ 2023년 기준
임대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초 임대기간 2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‣ 최대 9회 재계약(2년 단위)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초 임대기간 2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‣ 최대 9회 재계약(2년 단위)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
#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

## ■ 지원대상

- ▶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- ▶ 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

## ■ 지원방법: 대상자가 이주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- 신청서류: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영수증(물품명 표시) 등
- 지원내용: 이사비(생필품 포함) 40만원 실비 지원